

2022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정기총회

차례

보고 안건

1. 2021 연구자의집 주요활동	01
2. 2021 연구자의집 부서별 활동내용	04

논의 안건

1. 2021 연구자의집 재정결산 및 감사보고서	17
2. 2022 연구자의집 활동계획	21
3. 2022 연구자의집 재정계획	27
4. 2022 연구자의집 정관변경	30

부록

1. 2021 연구자의집 활동일지	35
2. 연구자권리선언	38
3. 연구자의집 정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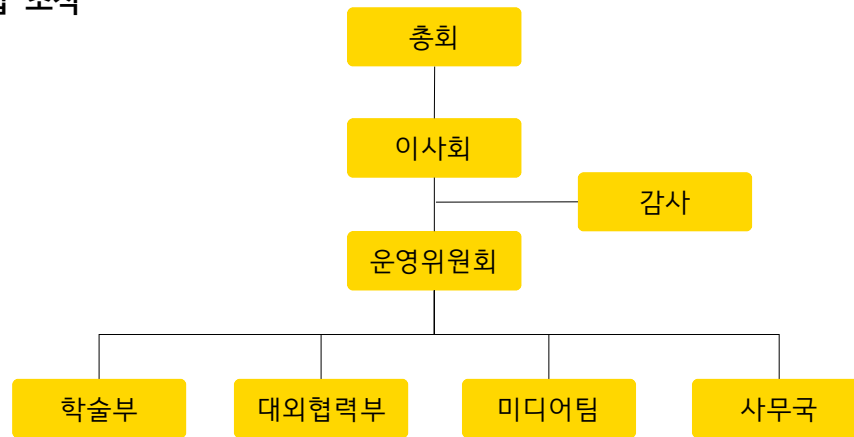
2021 연구자의집 주요활동

2021 연구자의집 주요활동

2020년 10월	•연구자의 집 창립총회(10.30)
2021년 1월	•연구자권리선언을 위한 토론회(1차.1.20)
2월	•연구자권리선언을 위한 토론회(2차.2.17)
3월	•연구자권리선언을 위한 토론회(3차.3.17)
4월	•연구자의 집 이사회(4.7)
5월	•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천막농성 지지방문(5.25)
6월	•제1차 연구자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6.4)
7월	•성신여대 인문도시사업 선정(7.1) •연구자의집+성신여대인문도시 2021 공동워크숍(7.12-14)
8월	•<연구자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 정례화 제안
9월	•제2차 연구자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 (9.3)
10월	•사회적기업 (주)온섬과 업무협약 체결(10.19) •사회적기업 (주)어울리와 업무협약 체결(10.2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10.26) •연구자권리선언 서명운동(10-11월) •연구자의집 뉴스레터 발행(10.30)
11월	•서울시교육청과 연구자의 집이 공동주관하는 교원 토의·토론 프로그램(11.1-12) •연구자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기자회견+공동토론회(11.16)
12월	•지정기부금단체 선정(12.31)

2021 연구자의집 부서별 활동내용

연구자의집 조직



연구자의집 사람들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학술부	대외협력부	미디어팀	사무국
최갑수	하주희	박배균	박철현	이승원	박서현	정정훈
박배균	이무성	최갑수	박지훈	엄은희	유정	유정
강명숙		박철현	김민환		김성은	김성은
천정환		김민환	박서현			
김종철		이승원				
		엄은희				
		유정				
		정정훈				
		박지훈				
		박서현				

2021 연구자의집 부서별 활동내용

2021년 연구자의 집 사업보고

부서	사업내용	세부활동
학술부	연구자권리선언	-발의에서 문안확정까지(2020.6~2021.9) -연구자권리선언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연구자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구자 차별철폐 토론회 -연구자 권리선언 지지 서명
대외협력부	서울시 교육청 협력사업	-2021 초·중등 교원 토의·토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자와 함께! 한 학기 한 권 깊게 읽고 쓰기!>
	지식공유플랫폼	지식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 협력 및 사업 방향 수립
	연구자사회주택 기반협력	-사회적 기업 온샘, 어울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과 업무협약
미디어팀	뉴스레터 제작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연구자의집 페이스북 운영
사무국	법인 관련 행정사무 총회 및 이사회 운영회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및 후원 확대 재정관리	-연구자의집 법인설립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창립총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지정기부금단체 신청(9.30~12.31) -회원모집 및 회비관리 -리플렛 제작 -월례 운영회의 준비 -이사회 -워크숍,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진행 -정산 및 회계보고
	연대사업	-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천막농성 지지방문 -평택대 교수 보복해직 철회와 평택대학교 민주화 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피케팅 참여 -비정규직교수노조 국회농성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농성장 방문 -차별금지법 농성장 방문
특별사업	인문도시사업	-커먼즈로 인문강북 만들기 (성신여대 인문도시사업단)

학술부

1. 연구자 권리선언 토론회

▶ 1차 토론회: 연구자의 집 X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2021년 1월 21일 16-18시 웨비나

사회: 박철현(국민대)

발표: 김민환(한신대)

토론: 이우창(서울대), 정혜진(성균관대), 황현우(동아대), 최동혁(KAIST)

▶ 2차 토론회: 연구자의 집 X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21년 2월 17일 16-18시, 웨비나

사회: 박철현(국민대)

발표: 김민환(한신대)

토론: 김진균(성균관대), 박중렬(전남대), 주봉철(조선대), 정보라(연세대), 김용섭(영남대)

▶ 3차 토론회: 연구자의 집 X 민교협 X 학단협>

2021년 3월 17일 19시-21시, 웨비나

사회: 박철현(국민대)

발표: 김민환(한신대)

토론: 김일규(강원대), 김명하(안산대), 남기정(서울대), 김주일(한국산업대), 박지용(경희대)

2.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 철폐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토론회(이하, 공동토론회) 개최

▶ 제1차 공동토론회 : <학술 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방과 비제도권의 목소리>

2021년 6월 4일 15시-17시, 서교인문사회연구실(온오프병행)

사회: 이승원(연구자의집)

발표: 장훈교(제주대),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토론: 천정환(지식공유연대), 홍명교(플랫폼c), 엄은희(연구자의집)

▶ 제2차 공동토론회 : <'연구자 권리선언' 문안확정과 공감대 확산 방안>

2021년 9월 3일 15시-18시, 민교협 사무실(온오프병행)

연구자권리선언 경과보고 : 박철현(국민대)

사회: 엄은희(연구자의집)

발표: 김민환(한신대), 김진균(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유정(연구자의집), 정혜진(대학원생노조), 김봉준(연구자의집), 황현우(대학원생노조), 정보라(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토론: 박중렬(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박치현(민교협), 홍덕구(대학원생노조), 정정훈(연구자의집), 김소진(민주법연)

▶ 제3차 공동토론회 : <'연구자 권리선언' 의 의의와 향후과제>

2021년 11월 16일 14-17시, 국회의원회관

사회: 배성인(학술단체협의회)

발표: 강내희(지순협 대안대학)

토론: 박정원(교수노조),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직수(사회공공연구원), 이우창(대학원생노조), 박치현(민교협), 김어진(한국비정규교수노조)

3.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이하 공대위)

▶ 공대위 활동 목표

연구자 권리선언 + 연구자 지지 서명

연구자 복지법 입법 활동

연구자 차별 철폐 활동: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연구자 차별 실태 조사

▶ 연구자 권리선언 지지 서명

연구자권리선언을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

경향신문, 프레시안, 한겨레, 한국일보, 대학지성 등 6-7회차에 걸친 언론기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총 1,686명의 연서명 달성

▶ 공대위 참여 단위

경남민주교수연대, 대학원생노조,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자의집, 인문학협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지식공유연대, 포럼 대학의미래,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4. 활동 자료

「연구자 스스로 권리 찾기를 선언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291>

(참세상 2021.10.08.)



「화학시료 폐기하던 대학원생 전신3도 화상...연구자권리선언을 제안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210512784609>

(프레스이안 2021.10.22.)



「연구자 권리선언이 나오기까지」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6526.html>

(한겨레 2021.10.25.)



「"대학만 살리면 되겠습니까, 연구자가 살아야 합니다"...연구자 권리 선언 시동」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410150002747?did=NA>

(한국일보 2021.10.25.)



「자기극복으로서의 '연구자 권리선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1040300035>

(경향신문 2021.11.04.)



「2,000명의 연구자들 "연구자 권리 선언 발표...차별철폐 논의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J-qZ_QB7-eg

(시사포커스 TV 2021.11.16.)



「윤영덕 의원, "대학강사 등 연구자의 권리보호 필요"」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59>

(2021.11.17.)



「1천686명 '연구자 권리선언'... "연구자 기본활동 토대 무너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16>

(교수신문 2021.11.18.)



「교수 아니면 낭인...연구자 권리 보장, 살 집이 시작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918.html

(2020.11.28.)



대외협력부

1. 서울시 교육청+연구자의 집 '교사 독서교육' 협력사업

업무	일정	세부내용
신청 안내 및 접수	2021.10.19.-27.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 안내
운영진 워크숍	2021.10.28.	연구자의집 내부에서 사업진행전반에 관한 논의
강사 사전연수	2021.10.29.-30.	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온라인도구(패들렛) 활용 연수
연수 진행	2021.11.1.-12.	A1.신영복으로 읽는 동양고전(김진균) A2.우리 시대 속 나의 생애(윤여일) A3.페미니즘 고전 읽기(김미선) B1.메타버스와 게임의 세계(강신규) B2.개혁기 중국의 도시화와 농민공(박철현) B3.시민-건축가의 서울읽기(서정일)
이수증 발급	2021.11.22.~23.	실제 수강 대상자 중 4회 이상 출석한 최종이수자 30명에게 이수증 및 도서발송
강사평가회	2021.11.29.-30.	참여강사와 연구자의집 운영진이 함께 2차례에 걸쳐 강사평가회 진행 평가 : •저녁 6시에 일주일에 3회씩 수업 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판단함. •출결이 강제되지 않다보니 수강생의 참석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자율연수의 한계) •강사-수강생 관계가 아니라 수강생들 간의 상호 교류와 토론이 시작되면서 강의의 분위기가 훨씬 개선되었음
결과보고	2021.11.30.	평가(만족도조사) : •전문적인 지식, 친절한 설명, 사례를 제시하셔서 편안하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준비를 굉장히 신경 써 준비해 오셔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고, 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참고 영상을 꾸준히 공유해주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주셔서 어려운 책 이해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최근 이론과 실제 활용된 사례 등 다양한 전문적 영역에 대한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져 주셔서 좋았습니다. •자율연수보다는 직무연수로 운영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주 3회로 진행되는 일정은 조금 벅찼습니다. 주 2회 정도 여유있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2. 지식공유플랫폼

1) 2021년 상반기

지식공유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논의 및 지식공유연대와의 협의 추진

- OA운동에 참여하는 학회들의 연합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지식공유플랫폼 초기 구상 설정

2) 2021년 10월 7일

빅데이터 및 AI 기술 기반 공공 인프라 구축 컨설팅 업체(TG) 면담

- 커먼즈 기반 지식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방향 합의

3) 2021년 11월 13일

지식공유연대 공동주최 “오픈엑세스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참가

- 연구자 중심, 커먼즈 기반 지식공유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자-전문가 공동 토론 및 향후 협력 일정 협의

4) 2021년 12월 18일

지식공유연대 공동주최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 심포지움 참가

- 지식공유플랫폼의 구체적인 상과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진전

5) 2021년 12월 29일, 2022년 1월 4일, 1월 20일

연구자의 집, 지식공유연대, 두드림, TG 등 지식공유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 2022년 내 지식공유플랫폼의 마중물로서 학회 연합 홈페이지 제작 및 OA 운동 참여 학회 결합 추진
- 지식공유, 연구협력, 연구자 상호부조 등 지식공유플랫폼의 포괄적인 생태계 확산을 위한 5개년 단계별 사업 추진 합의

3. 연구자공동체사회주택

1) 삼양사거리역 인근 연구자 주택

- LH 추진 사업
- 당초 계획 보다 지연되어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

2) 사회주택업체 3곳과 업무협약

- 온샘, 어울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업무협약
- 2021년 11월, 국토부의 테마형 매입임대 공모사업에 지원
- 이 중 어울리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제안서가 현재 선정된 상태
- 어울리는 신림역 인근, 민달팽이는 연희동에 연구자 사회주택 건설 추진 중

-

미디어팀

1. 연구자의집 페이스북 운영

2. 뉴스레터 제작_분기별 발행

1) 2021년 10월 30일 제 1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뉴스레터 1호 구성>

- 서문 : 연구자의집 소개를 포함한 뉴스레터 발간사
- 연구자의집 활동소식
 - 연구자 권리선언 최종안
 - 연구자 권리선언 기획취지와 토론회 개최 소개글
 - 2021년 6월 4일(금) 지식공유 학술세미나
 - 2021년 9월 3일(금) 연구자 권리선언 문안 확정 및 확산 방안 논의
 - 최갑수 선생님과 인터뷰
- 단신
 - 연구자의집+성신여대 인문도시사업 소개 (북한산 자락에서 본 한국근현대사, 2021년 인문주간 소개 포함)
 - 2021 초·중등 교원 토의·토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자와 함께! 한 학기 한 권 깊게 읽고 쓰기!> 소개
 - 연구자의집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취지 소개
 - 연구자의집 정기후원 안내

2) 2022년 1월 31일 제 2호 뉴스레터 발송

<뉴스레터 2호 구성>

- 서문 : 2호를 내며
- 연구자의집 활동소식
 - 11월 16일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 과제
 - 회원 인터뷰 (박배균 선생님)
 - 2021 초·중등 교원 토의·토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자와 함께! 한 학기 한 권 깊게 읽고 쓰기!
 - 인문도시사업 청소년 누구인가 강의 : 소개(이승원) 및 강의소감(표정훈)
 - 박근혜 특별사면 철회 성명서
- 단신
 - 평택대 선재원 선생님 보복 해직 철회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
 - [인문도시사업] 무엇인가 강의
 - 2022년 2월 개최 예정 정기총회 소개
 - 연구자의집 정기후원 안내

사무국

1. 연구자의집 법인 관련 행정업무

- 2019년 1월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집 창립
- 2020년 3월부터 법인설립계획, 정관, 사업계획 논의
-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창립총회 개최
- 2021년 2월 4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 2021년 3월 4일 설립등기 및 법인인감등록 완료
- 2021년 3월 10일 고유번호증 발급
- 2021년 9월 17일 사업자등록증 정정발급
- 2021년 12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사용 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소식을 전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 2022년 홈페이지 리뉴얼 계획 중

3. 회원모집 및 회비관리

-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과 오프라인(리플렛) 홍보를 통한 회원확대 및 재정안정화 구축
- MRM을 활용하여 회원 및 후원자 정보관리 체계화

4. 총회 및 회의운영

- 연 1회 정기총회 개최
- 연 1회 이사회 개최
- 월 1회 운영회의 진행
- 주 1회 사무국 회의 진행

5. 워크숍,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진행

- 워크숍, 토론회 등 행사진행 및 지원
- 장소섭외,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며, 비대면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환경 구축

6. 정산 및 회계보고

- 수시로 세무사와 교류하며 정산 및 세금, 각종 신고업무 관련 자문을 구함

- 일계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갖추고 때에 맞춰 신고업무를 하는 것이 아직 서투르나 안정화되어가는 중
- 아직은 유동금액, 수입지출 횟수가 많지 않지만 연구자의집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함에 따라 회계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역량이 필요
- 월 1회 운영회의에서 회계보고와 회원증감 보고
- NPO센터에서 지원하는 회계 감사 상담을 받을 계획

7. 연대사업

- 20210525 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천막농성 지지방문
- 평택대 교수 보복해직 철회와 평택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피케팅 참여
- 비정규직교수노조 국회농성
-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농성장 방문
- 차별금지법 농성장 방문

특별사업

인문도시사업(2021년 활동보고)

1. 커먼즈로 인문강북 만들기(성신여대 인문도시사업단)

1) 시민인문강좌

-9-10월 : 북한산자락에서 본 한국근현대사

- 총 48명 신청 : 비대면 (줌) 강의
- 강의진행일정
 - ▶1강(09.07.화.19시) 몽양 여운형_독립과 통일을 염원한 지도자(장석준)
 - ▶2강(11.18.목.19시) 성재 이시영_청렴결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킴이(신주백)
 - ▶3강(12.02.화.19시) 심산 김창숙_독립운동을 이끈 유림의 거두(박종린)
 - ▶4강(12.16.목.19시) 늦봄 문익환_통일과 민주화를 부르짖은 선구자(최형묵)

-10월 : 제 16회 인문주간 <커먼즈로 인문강북 만들기>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인문주간 인문학콘서트 1 :근현대사, 흥 석률	인문주간 인문학콘서트 2 :419혁명, 이 승원	인문주간 인문학콘서트 3 :서울숲, 엄은 희	인문주간 씨네마토크: 권 경 원 (감 독)		인문주간 답사 : 북한 산 둘레길 답 사, 이현군

-11-12월 : 청소년 강좌 <누구인가_다양한 직업의 세계>

- 총 48명 신청 : 비대면 (줌) 강의
- 강의진행일정
 - ▶1강(11.04.목.19시) 의사란 누구인가(김형렬)
 - ▶2강(11.18.목.19시) 작가란 누구인가(표정훈)
 - ▶3강(12.02.목.19시) 건축가란 누구인가(정기황)
 - ▶4강(12.16.목.19시) 기자란 누구인가(박에스더)

2) 연구자공동체사회주택FGI

-배경 : 인문도시사업의 지정과제인 지역 연구자사회주택과의 협업은 불가능한 상황.
2022년 착공도 불투명하여 대안적 사업이 필요. 이를 위해 연구자사회주택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통한 추후 강북지역에서 연구자사회주택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청년연구자(입주대상)를 대상으로한 FGI실시

-진행 : 총 12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FGI 실시

인문도시사업(2022년 활동계획 보고)

1. 시민강좌 프로그램

1) 인문강좌 : 강북구에서 동아시아로 : 글로벌 인문학

강북구에서 동아시아로 : 글로벌 인문학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일정	수강인원	비 고
1	글로벌과 로컬 - 동아시아를 보는 강북의 시선	박지훈	2022. 03	30명	
2	다렌에서 본 20세기 동아시아의 전쟁	박철현	2022. 03	30명	
3	냉전의 섬, 오키나와 금문도	김민환	2022. 04	30명	
4	키르기스 목축지대의 공간배치	공원국	2022. 04	30명	
5	타이베이의 두 얼굴	김봉준	2022. 05	30명	
6	호탄의 창건설화	윤성제	2022. 05	30명	

2) 체험프로그램 : 강북구와 연구자의 만남

번호	체험명(주제)	강사 및 행사주관기관	일정	참여인원	비 고
1	보드게임으로 기후변화 '한방'에 이해하기	강정석	2022.02 2회차	15명	
2	강북을 걷다	이현군	2022.03	20명	
3	419탑과 민주시민의 열 : 한국의 민주주의	국립419민주묘지	2022.04	20명	
4	북서울꿈의숲 생태탐방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2022.05	20명	

2. 인문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 중장기목적: 대학박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형성->동북지역 인문네트워크
- 중장기 목적을 활용하여 6월 초 공공-대학-지역 연구자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 6월말 컨퍼런스 개최 시까지 동북지역 대학-지역-연구자 연계 워크숍 진행

2021 연구자의집 재정결산 및 감사보고서

2021 연구자의집 재정결산 및 감사보고서

2021 수입

항목	과목	구분	금액
재산이전			8,723,596
소계			8,723,596
후원금	정기후원금	개인(CMS)	892,080
	일시후원금	개인	19,454,240
소계			20,346,320
지원금	사업지원금	서울시 교육청+연구자의 집 '교사 독서교육' 협력사업	22,000,000
	사업분담금	단체	900,000
소계			22,900,000
기타	이자	예금이자	5,767
	잡수익	기타잡수익	11,200
소계			16,967
수입합계			51,986,883
전년도 이월금			0
수입총계			51,986,883

2021 지출

항목	세부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일반 운영비	인력비용	인건비	12,504,000	사업비	인건비	17,395,220	
		4대보험료	1,012,020		도서인쇄비	2,490,800	
	운영비용	도서인쇄비	794,000		비품소모품비	614,090	
		비품소모품비	151,720		회의비	805,170	
		회의비	1,507,620		여비교통비	237,500	
		여비교통비	54,300		후원금	300,500	
		차량유지비	130,000		보험료	15,500	
		세금공과금	385,450		수수료	172,900	
		임차료	1,350,500		소계	22,031,680	
		수수료	860,759				
		통신비	67,020				
		보험료	15,500				
		소계			18,832,889		
	지출합계						40,864,569
차년도 이월금						11,122,314	
지출총계						51,986,883	

감 사 보 고 서

감사일시 : 2022년 2월 7-8일

감사대상 기간 : 2021년 3월 10일 - 2021년 12월 31일

감사범위 : 이메일(E-mail)을 통하여 전달받은 아래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

1. 지출결의서 + (영수증)세금계산서(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PDF 파일)
2. 입출금거래내역조회(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PDF파일)
3. 2021년 3-12월 일계표(PDF파일)
4. 2021 수입(총괄)
5. 2021 지출(총괄)
6. 2021년 연구자의집 수입/지출 내역(일자별)
7. 2021년 연구자의집 월별 수입/지출내역(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8. 기타
-이체처리결과조회(상세)

감사방법 : 2021년 감사를 위하여 감사범위에 열거된 회계에 관한 자료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검토함

감사의견 :

- 비영리조직체로서 일반적인 비영리 회계관행에 따라 단순 현금식 분개로 수입지출은 적절한 내부통제에 의해 일정한 기간(2021.3.10.-12.31) 수입과 지출내역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음
- 일정한 시점(2021.12.31)의 자산 등 재정상태나 일정한 기간(2021.3.10.-12.31) 운영성과를 회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하기는 어려워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 등 보완이 요구됨
- 재정안정화를 위해 CMS 후원회원 확충이 요구됨
- 연구자의 집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구 인력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북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2021.2.9.

감사 해주희  인)

이무성  인)

2022 연구자의집 활동계획

2022 연구자의집 활동계획

학술부

1. 공대위 활동 참가

- ▶ 연구자 권리와 복지 증진, 연구안전망 확보의 제도적 기반인 "연구자 복지법" 제정
- ▶ "국가지원 학술연구교수" 전면 확대
- ▶ 강사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의 "강사법 개정"
- ▶ 평생연구를 위한 물적 기반 제공의 "연구자 공제조합"
- ▶ 신규 세대가 함께 하는 "연구자 상생기금"
- ▶ 성차별, 학벌 차별, 연구부정, "대학갑질 신고 119센터"

2. 연구자 복지법 TF

- ▶ 기존 '연구자 권리선언 팀'을 연구자 복지법 TF로 전환
- ▶ 참가자: 박철현, 유정, 황현우, 김민환, 김진균, 박지훈,
- ▶ 법률 전문가 총원 필요

3. '학문자본주의 세미나'

- ▶ 신자유주의 시대 고등교육의 변화와 대안의 모색을 위해 학문 자본주의 세미나 실시
- ▶ 3주에 1회씩 총 10회 세미나 계획 중 (오는 2월 17일 1회 세미나 시작)
- ▶ 연구자의 집 회원에게 우선적인 참가 권한 부여
- ▶ 세부 주제는 '학문 자본주의라는 개념', '지식의 본성과 성격 변화', '기업가주의적 대학과 학문 자본주의의 다양성', '초국적 학문 자본주의', '학술 노동의 프롤레타리아트화', '주변부/남반부 국가의 학문 자본주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학문 자본주의' 등

4. '시니어+신예 대중강좌'

- ▶ 연구자의 집 소속 교수연구자(시니어 교수연구자, 신예 교수연구자)의 대중강좌
- ▶ 주제
프랑스 혁명사, 신자유주의 시대의 예술과 문화, 87년 체제 이후 한국 정치사 등
- ▶ 대상 : 연구자의 집 회원, 시민사회
- ▶ 방식 : 월1회 3개월 코스, 유튜브 중계, 녹화해서 아카이빙

대외협력부

1. 지식공유플랫폼

1) 연구자의 집, 지식공유연대, 두드림, TG 등 4자 업무협약 및 학회 연합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협력 추진

- 이를 위한 예산 배정 필요

2) 지식공유플랫폼/학회 연합 홈페이지 운동으로 학회, 연구소, 연구자 참여 유도 및 동 사업의 홍보

3) 지식공유플랫폼 기반 OA 운동을 위한 참여 학회/연구자 연구물 데이터 베이스/아카이브 구축 사업 착수

2. 연구자사회주택

1) 지역별 사회주택업체와의 업무 협약 확장 (서울 -> 수도권 및 전국적인 업무 확장)

2) 국토부 테마형 매입임대 공무사업 지원 (계속)

3) 삼양사거리역 인근 연구자 주택 공간활용 기획 (계속)

미디어팀

▶ 2022년 미디어팀 뉴스레터 발행 계획

- 총 4회의 뉴스레터 발행 예정
- 발행예정일
: 1월 31일(2호), 4월 30일(3호), 7월 31일(4호), 10월 31일(5호)
- 활용 매체
: 스티비(<https://stibee.com/>)
: 일정 수준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
- 뉴스레터 발행 비용
: 1년 총 예산 100만원
: 외부 필진에게 A4 1매 당 5만원 지급
: 호 당 25만원 이상을 외부 필진에게 지급할 수는 없음

사무국

1. 조직정비를 통한 기반 다지기

1)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활동소식을 전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 이후 홈페이지 리뉴얼을 염두에 두고 여러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려고 함
-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생산

2) 회원확대 및 회비관리

-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과 오프라인(리플렛) 홍보를 통한 회원확대 및 재정안정화 구축

- MRM을 활용하여 회원 및 후원자 정보관리 체계화
- 정기후원 외에 일시후원도 가능하도록 MRM시스템 기능 확대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회비납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안정화

- 회원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회원들이 연구자의집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

3) 회의운영

- 총회, 이사회, 월 1회 운영회의, 주 1회 사무국 회의를 통해 연구자의집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방향을 모색
- 각 부서들의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

4) 워크숍,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진행

- 워크숍, 토론회 등 행사진행 및 지원
- 비대면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5) 정산 및 회계보고

- 수시로 세무사와 교류하며 정산 및 세금, 각종 신고업무
- 일계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 월 1회 운영회의에서 회계보고와 회원증감 보고

2. 연대·협력사업

-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현장에 꾸준히 연대

2022 연구자의집 재정계획

2022 연구자의집 재정계획

2022 예상수입

항목	과목	구분	금액
후원금	정기후원금	개인(CMS), 단체	14,400,000
	일시후원금	개인, 단체	33,600,000
소계			48,000,000
수입합계			48,000,000
전년도 이월금			11,122,314
수입총계			59,122,314

2022 예상지출

항목	세부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일반 운영비	인력 비용	인건비	25,000,000	사업비	목적 사업비	세미나	2,000,000
		4대보험료	3,000,000		토론회	2,000,000	
	운영 비용				뉴스레터	1,000,000	
		도서인쇄비	600,000		지식공유 플랫폼	3,000,000	
		소모품비	500,000		연대사업	1,000,000	
		회의비	1,500,000		일반 사업비 특별 사업비		2,000,000
		여비교통비	120,000				2,000,000
		차량유지비	50,000	소계		13,000,000	
		세금공과금	1,000,000				
		임차료	500,000				
		수수료	2,500,000				
		통신비	200,000				
		보험료	30,000				
	소계		35,000,000				

지출합계	48,000,000
차년도 이월금	11,122,314
지출총계	59,122,314

2022 연구자의집 정관변경

2022 연구자의집 정관변경

1. 회원관련

현재	개정(안)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종류 추가) 제6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관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특별회

납부하고 이 법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법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

2. 수익사업관련

현재	개정(안)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진흥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3. 학술회의,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의 학술교류사업 3. 강연회, 연수회, 집중세미나 등의 교육협력사업 4.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증진 및 지식공유를 위한 공공사업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진흥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3. 학술회의,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의 학술교류사업 3. 강연회, 연수회, 집중세미나 등의 교육협력사업 4.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증진 및 지식공유를 위한 공공사업 ②그 외 목적사업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 처리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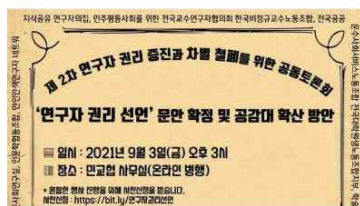
2021 연구자의집 활동사진

연구자권리선언

연구자의집 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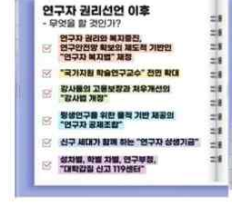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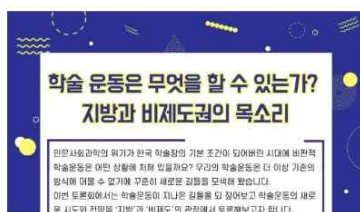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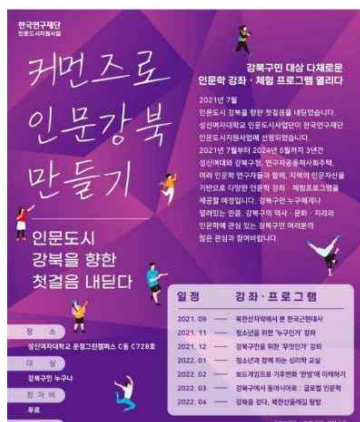






scholars' commons
연구자의 집

뉴스레터 1호
2021.10.30



2021 연구자의집
활동사진모음



연구자권리선언

전문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 교육을 수행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는 연구자들에게 활동의 기본 토대가 된다. 우리는 현재 이 토대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하며, 환경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절실한 성찰적이고 창발적인 연구는 단기적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경쟁 체제에 의해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는 것이 마치 정언명령처럼 통용되면서 진리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조차 사실상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무엇보다 대학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낙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연구자로서의 삶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는 단순히 연구자라는 특정 직종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공공적 가치에 기반한 연구 활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여 침묵하고 있기에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교육과 연구에서 공공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그간 학문 활동의 터전이었던 대학의 공동체성을 보듬어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정당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고 사회적 책무를 밝힌다.

제1조 연구자의 정의

연구자는 연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체계적 지식을 연마하고 전수하며, 합리적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연구 노동이라 한다. 호기심을 품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연구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자는 인류 공공의 지적 체계를 갱신함으로써 공동체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책무

제1항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연구자는 서로를 학문 공동체의 동료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제3항 연구자는 인류 사회와 생태 환경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평등

제1항 모든 연구자는 각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에서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모든 연구자는 젠더, 섹슈얼리티, 지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지역, 학교, 신체조건, 혼인,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연구 성과

연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공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성과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구 성과가 왜곡·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연구 환경

연구 환경은 연구를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과 학문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를 포괄하는 공공영역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지속과 연구 역량의 증진을 위해 연구 환경의 안전성·안정성·개방성·독립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 (안전성) 연구자는 연구 수행상의 각종 사고와 성적·정신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연구 환경을 보장받고,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안정성) 연구자는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과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항 (개방성) 연구자는 연구 생산물, 자료, 기관 및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지 않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환경 속에 고립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독립성)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타인에게 침탈 받지 않는 시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정책 참여

연구자는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조직 결성

연구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연구, 교육, 노동 관련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사회 경제적 권리

국가는 전체 사회를 대표하여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학문의 독립성, 자생성,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항 국가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연구 공간, 자료 접근성, 강의와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항 국가는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확대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 국가는 학문 공동체에 대한 연구자의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항 국가는 연구자가 학문 및 교육 분야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제5항 국가는 연구자 관련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제6항 국가는 연구자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는 여러 사회 보험과 연구자 생애 주기에 맞는 재정 지원 등의 제공, 재생산 권리 보장, 연구자를 위한 사회 주택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定 款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진흥 및 고등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진취적 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진흥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3. 학술회의,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의 학술교류사업
3. 강연회, 연수회, 집중세미나 등의 교육협력사업
4.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증진 및 지식공유를 위한 공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법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단, 초대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기부금 모금 및 공개) 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최갑수			서울대 명예교수	2년
이 사	박배균			서울대 교수	2년
이 사	김종철			서강대 교수	2년
이 사	강명숙			배제대 교수	2년
이 사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	2년
감 사	이무성			민교협 노동위원장	2년
감 사	하주희			변호사	2년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발 기 인	최갑수		
발 기 인	박배균		
발 기 인	박철현		
발 기 인	유정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금액단위 : 원)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없음	0	0	
채권 등	없음	0	0	
주 식	없음	0	0	
기타상품	없음	0	0	
토지	없음	0	0	
건물	없음	0	0	
합 계	없음	0	0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금액단위 : 원)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없음	0	0	
채권 등	없음	0	0	
주 식	없음	0	0	
기타상품	없음	0	0	
토지	없음	0	0	
건물	없음	0	0	
합 계	없음	0	0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중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